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57호 2023. 10. 12.(목)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350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사천시 공고 제2023-1363호 사천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9
- 사천시 공고 제2023-1392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9
- 사천시 공고 제2023-1394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사천시 공고 제2023-1397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3
- 사천시 공고 제2023-1398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2
- 사천시 공고 제2023-1402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50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부대 명칭 변경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신설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대 명칭 변경(제3조 제5항 제5호)

- 군사안보지원부대 → 국군방첩부대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제3조 제6항 신설)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2,  
FAX : 831- 6021)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부대 명칭 변경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신설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대 명칭 변경(제3조 제5항 제5호)

- 군사안보지원부대 → 국군방첩부대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제3조 제6항 신설)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통합방위법」 제5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1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 10. 12. ~ 2023. 11. 1.(20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 ④ (생략)</p> <p>⑤ 협의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 4. (생략)</p> <p>5. <u>군사안보지원부대 관계자</u></p> <p>6. ~ 12.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u></p> <p>6. ~ 12. (현행과 같음)</p> <p><u>⑥ 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u>보궐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관 련 법 규

### □ 통합방위법

-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63호

「사천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을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공영장래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공영장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공영장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831-6022)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사천시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주민복지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영장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공영장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공영장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제7조(업무위탁) 시장은 공영장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래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92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남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장의 정수 개정(안 제4조 별표1)
- 나. 반장의 정수 개정(안 제6조 별표3)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 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사남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남면 이·통·반장 정수 조정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3개 행정리 및 19개 반 신설

삼정그린코아 신축(1,295세대)	유천4리(43통, 신설), 1~6반 신설
	유천5리(44통, 신설), 1~6반 신설
	유천6리(45통, 신설), 1~7반 신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16,790천원 증(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 이상)

- 제출의견: 없음, 건

-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 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 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합 계		242	
사 천 읍	소 계	39	
	선 인 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3	사주1리, 사주2리, 사주3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5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구암6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정 동 면	소 계	33	
	고 읍 리	9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동계9리 일원
	예 수 리	6	예수1, 반용, 예수2, 예수3, 예수5, 예수6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사 남 면	소 계	45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7	유천, 유천2, 유천3, 하동, 유천4, 유천5, 유천6 일원
	월 성 리	17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용 현 면	소 계	31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축 동 면	소 계	17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곤 양 면	소 계	30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목 곡 리	3	목단, 목실, 동천 일원
	홍 사 리	1	홍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향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곤 명 면	소 계	25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립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서 포 면	소 계	22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량 리	2	구량,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 [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 계	1,584
사천읍	212
정동면	151
사남면	<u>142</u>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09
동서금동	110
별용동	217
향촌동	81
남양동	85

## 관 련 법 령

###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하부조직) ①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 2020.12.17.>

②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17.>

④리·통은 3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20.12.17.>

제3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94호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제2항)
- 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 확대(안 제3조)
- 다. 신용카드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 831-5543,

FAX : 831-6062)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제2항)
- 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 확대(안 제3조)
- 다.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제8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이 조례 제1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u>시행규칙</u>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시행규칙</u>----- ----- ----- -----.</p>
<p>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u>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u></p>	<p>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u>지하수개발·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u></p>
<p>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p>	<p>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p>
<p>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p>	<p>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p>
<p>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p>	<p>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p>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3. (생략)
4.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6. (생략)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8년-----  
-----  
-----  
-----  
-----  
-----.

제10조(세출)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  
-----
5. 6. (현행과 같음)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  
-----  
-----.



## 관 련 법 규

###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

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97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명칭 단순화로 찾기 쉬운 과학관 정보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시설 관람료 감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 사천항공우주과학관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나. 대관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서식 삭제(안 제15조 ~ 제21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콘텐츠 개선에 따른 기획전시실 추가로 대관 불가

다. 관람료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 및 연계시설 관람료 감경 근거 마련  
(안 제10조 및 안 제10조의2)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474,

FAX : 831- 6044)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명칭 단순화로 찾기 쉬운 과학관 정보제공
-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설 관람료 감경 근거 마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 사천항공우주과학관
- 나. 관람료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10조)
  - 다 연계시설 관람료 감경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 라. 대관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서식 삭제(안 제15조 ~ 제21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콘텐츠 개선에 따른 기획전시실 추가로 대관 불가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 10. 12. ~ 2023. 11. 1.(20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사천항공우주과학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사천항공우주과학관”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관람료)”를 “(관람료 및 체험료)”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4D 및 VR 등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관람료”를 “관람료 및 체험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람이”를 “관람 및 체험이”로, “관람료 전액을”을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람료의 면제)”를 “(관람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시장은”으로,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관람료(상설 전시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를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100분의 50 감경

2. 제3조제6호에 따른 군인: 청소년 관람료 적용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시설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연계시설 관람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관람료 및 체험료

### 1.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전시관	개 인	-	1,500	2,000	3,000
	단 체 (20명 이상)	-	1,000	1,500	2,500

### 2. 체험료

(단위 : 원)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4D(특수영상관)	-	1,000	1,500	2,000
VR(가상현실)	1,500	2,000	2,500	3,000
비행기조립 DIY	4,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u>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사천항공우주과학관</u>----- -----.</p>
<p>제2조(위치) <u>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u>(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8 일원에 둔다.</p>	<p>제2조(위치) <u>사천항공우주과학관</u>---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대관료</u>”란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u>요금을 말한다</u>.</p> <p>3. ~ 8.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 <u>시장</u>은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 <u>사천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 ----- ----- -----.</p>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1조(관람권 등) ① (생략)

②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는 무료 관람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시할 -----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100분의 50 감경

2. 제3조제6호에 따른 군인: 청소년 관람료 적용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시설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연계시설 관람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11조(관람권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은 기획전 시설로 한다.

제16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대관시

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 허가를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 개최를 위한 대관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

<삭 제>

<삭 제>

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  
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18조(대관료)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대관료 감면) 제18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사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  
센트 감면
3.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 50퍼센트 감  
면
4. 과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

<삭 제>



정되는 경우 : 전액 또는 일부감  
면

제20조(대관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개시 전 사용불능이  
된 경우
3. 사용 7일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

②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90퍼  
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 이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 한 경우에는 사용당  
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  
고,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중 위약  
금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70퍼센트  
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자  
가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삭 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

자는 대관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lt;개정 2019.12.31.&gt;</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람료(제9조제1항 관련)</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유아</th> <th>어린이</th> <th>청소년, 군인</th> <th>어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시관</td> <td>개인</td> <td>-</td> <td>1,500</td> <td>2,000</td> <td>3,000</td> </tr> <tr> <td>단체 (20명 이상)</td> <td>-</td> <td>1,000</td> <td>1,500</td> <td>2,500</td> </tr> <tr> <td>특수영상관(4D)</td> <td>-</td> <td>1,000</td> <td>1,500</td> <td>2,000</td> </tr> <tr> <td>가상현실(VR) 체험료</td> <td>1,500</td> <td>2,000</td> <td>2,500</td> <td>3,0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구분은 제3조(정의)에서 규정</li> <li>* 관람료 50퍼센트 감경 대상 : 남해안 남중권 9개 사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단, 4D, VR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 : 사천·진주시, 남해·하동군,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li> </ul> </li> <li>*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 : 무료관람 (단, 4D, VR은 제외)</li> </ul>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대관료(제18조제1항 관련)</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사용기준</th> <th>단위</th> <th>금액(원)</th> <th>면적</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전시관</td> <td>1일(8시간 기준)</td> <td>회</td> <td>30,000</td> <td>162.09㎡</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 정산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대관 받은 자가 직접처리 하여야 한다.</li> </ul>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전시관	개인	-	1,500	2,000	3,000	단체 (20명 이상)	-	1,000	1,500	2,500	특수영상관(4D)	-	1,000	1,500	2,000	가상현실(VR) 체험료	1,500	2,000	2,500	3,000	구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원)	면적	기획전시관	1일(8시간 기준)	회	30,000	162.09㎡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람료 및 체험료</b></p> <p><b>1. 관람료</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유아</th> <th>어린이</th> <th>청소년, 군인</th> <th>어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시관</td> <td>개인</td> <td>-</td> <td>1,500</td> <td>2,000</td> <td>3,000</td> </tr> <tr> <td>단체 (20명 이상)</td> <td>-</td> <td>1,000</td> <td>1,500</td> <td>2,500</td> </tr> </tbody> </table> <p><b>2. 체험료</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유아</th> <th>어린이</th> <th>청소년, 군인</th> <th>어른</th> </tr> </thead> <tbody> <tr> <td>4D(특수영상관)</td> <td>-</td> <td>1,000</td> <td>1,500</td> <td>2,000</td> </tr> <tr> <td>VR(가상현실)</td> <td>1,500</td> <td>2,000</td> <td>2,500</td> <td>3,000</td> </tr> <tr> <td>비행기조립 DIY</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lt;삭 제&gt;</p>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전시관	개인	-	1,500	2,000	3,000	단체 (20명 이상)	-	1,000	1,500	2,500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4D(특수영상관)	-	1,000	1,500	2,000	VR(가상현실)	1,500	2,000	2,500	3,000	비행기조립 DIY	4,000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전시관	개인	-	1,500	2,000	3,000																																																																				
	단체 (20명 이상)	-	1,000	1,500	2,500																																																																				
특수영상관(4D)	-	1,000	1,500	2,000																																																																					
가상현실(VR) 체험료	1,500	2,000	2,500	3,000																																																																					
구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원)	면적																																																																					
기획전시관	1일(8시간 기준)	회	30,000	162.09㎡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전시관	개인	-	1,500	2,000	3,000																																																																				
	단체 (20명 이상)	-	1,000	1,500	2,500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4D(특수영상관)	-	1,000	1,500	2,000																																																																					
VR(가상현실)	1,500	2,000	2,500	3,000																																																																					
비행기조립 DIY	4,000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98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이용료 인상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료 및 할인 이용료 인상(별표 1, 별표 2)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5, FAX : 831-6024)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료 인상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및 할인 이용료 인상(별표 1, 별표 2)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8,000	16,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3,000	21,000	15,000	13,000	1명 요금
	소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 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포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포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신·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lt;개정 2023. 9. 2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2">광복요금(원)</th> <th colspan="2">편도요금(원)</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개인요금</th> <th>단체요금</th> <th>개인요금</th> <th>단체요금</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캐빈</td> <td>대인 15,000 소인 12,000</td> <td>13,000 10,000</td> <td>9,000 6,000</td> <td>7,000 4,000</td> <td>1명 요금</td> </tr> <tr> <td>크리스탈캐빈</td> <td>대인 20,000 소인 17,000</td> <td>18,000 15,000</td> <td>12,000 9,000</td> <td>10,000 7,000</td> <td>1명 요금</td> </tr> </tbody> </table> <p>※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광복권을 발급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전역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바브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별표 3] &lt;개정 2022.6.30.&gt;</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캐빈</th> <th>크리스탈캐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td> <td>대인 10,000원 소인 7,000원</td> <td>15,000원 12,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국가보훈대상자</td> <td>12,000원</td> <td>17,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장애인</td> <td>12,000원</td> <td>17,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경로우대자</td> <td>13,000원</td> <td>18,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td> <td>대인 12,000원 소인 9,000원</td> <td>17,000원 14,000원</td> <td>1명 요금</td> </tr> </tbody> </table> <p>※ 1. 이용료 할인은 광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록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대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록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인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대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록 둔 사람을 말한다.</p>	구분	광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캐빈	대인 15,000 소인 12,000	13,000 10,000	9,000 6,000	7,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캐빈	대인 20,000 소인 17,000	18,000 15,000	12,000 9,000	10,000 7,000	1명 요금	구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소인 7,000원	15,000원 12,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2,000원 소인 9,000원	17,000원 14,000원	1명 요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광복요금(원)</th> <th colspan="2">편도요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개인요금</th> <th>단체요금</th> <th>개인요금</th> <th>단체요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캐빈</td> <td>대인 18,000 소인 18,000</td> <td>18,000 15,000</td> <td>12,000 9,000</td> <td>10,000 7,000</td> <td>1명 요금</td> </tr> <tr> <td>크리스탈캐빈</td> <td>대인 23,000 소인 20,000</td> <td>21,000 18,000</td> <td>16,000 12,000</td> <td>13,000 10,000</td> <td>1명 요금</td> </tr> </tbody> </table> <p>※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광복권을 발급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전역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바브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구분</th> <th>일반캐빈</th> <th>크리스탈캐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td> <td>대인 13,000원 소인 10,000원</td> <td>18,000원 16,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국가보훈대상자</td> <td>18,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장애인</td> <td>18,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경로우대자</td> <td>18,000원</td> <td>21,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td> <td>대인 16,000원 소인 12,000원</td> <td>20,000원 17,000원</td> <td>1명 요금</td> </tr> </tbody> </table> <p>※ 1. 이용료 할인은 광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록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대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록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인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대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록 둔 사람을 말한다.</p>	구분	광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캐빈	대인 18,000 소인 18,000	18,000 15,000	12,000 9,000	10,000 7,000	1명 요금	크리스탈캐빈	대인 23,000 소인 20,000	21,000 18,000	16,000 12,000	13,000 10,000	1명 요금	구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소인 10,000원	18,000원 16,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8,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8,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8,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6,000원 소인 12,000원	20,000원 17,000원	1명 요금
구분		광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캐빈	대인 15,000 소인 12,000	13,000 10,000	9,000 6,000	7,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캐빈	대인 20,000 소인 17,000	18,000 15,000	12,000 9,000	10,000 7,000	1명 요금																																																																																								
구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소인 7,000원	15,000원 12,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2,000원 소인 9,000원	17,000원 14,000원	1명 요금																																																																																										
구분	광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캐빈	대인 18,000 소인 18,000	18,000 15,000	12,000 9,000	10,000 7,000	1명 요금																																																																																								
	크리스탈캐빈	대인 23,000 소인 20,000	21,000 18,000	16,000 12,000	13,000 10,000	1명 요금																																																																																							
구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소인 10,000원	18,000원 16,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8,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8,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8,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6,000원 소인 12,000원	20,000원 17,000원	1명 요금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정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공고 제2023-1402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조례 문구의 확대 해석 및 법리 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지역을 명시화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명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명시 (안 제15조제1항) 등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60, FAX: 831-6049)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조례 문구의 확대해석 및 범리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지역을 명시화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명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명시 (안 제15조제1항) 등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0. 12. ~ 2023. 11 .1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임신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으로, “보장구 급여”를 “보조기기 급여”로, “보장구 지원기간”을 “보조기기 지원기간”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상시”를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57호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운전원은 콜센터의”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사천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운영”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을 “대한”으로 한다.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u>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p> <p>②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체장애, 뇌병변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u></li> <li>2. <u>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u></li> <li>3. <u>임산부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u></li> <li>4. <u>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u></li> </ol>	<p>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u>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u></li> <li>2. <u>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u></li> <li>3. <u>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u></li> </ol> <p>② <u>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u></li> <li>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li> <li>3. <u>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u></li> <li>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u></li> </ol>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이 어려운 사람

<신 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  
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생 략)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  
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  
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  
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  
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  
목적에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우  
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부  
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  
-----  
-----  
-----

2.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신 설>

나. (생략)

3. (생략)

③ ~ ⑦ (생략)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가. -----  
-----  
----- 보조  
기기 -----  
-----  
-----  
-----

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  
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다. (현행 나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  
-----  
-----  
-----  
-----  
-----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2.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  
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  
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  
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  
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  
수사항) ①·② (생략)

③ 운전원은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

----- 보조기

기 급여 -----

----- 보조기기 지원기간 --

-----

-----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

----- 매일 24시간 -----

-----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  
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

-----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2. (생략)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생략)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생략)

② (생략)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사천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 안전 --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현행과 같음)

6. ----- 대한 -----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규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

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